

#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8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대형 농기계 수리 및 노후 농기계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감면되는 부품대금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감면액을 상향조정. 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.구조문 대조표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련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실시(2005.6.10~7.4)결과 의견제출 없음

평창군조례 제 호

##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” 를 “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5조 단서중 “5만원” 을 “10만원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부품대금)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.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<u>5만원</u>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<u>5만원</u> 초과인 경우에는 <u>5만원</u> 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	제5조(부품대금) ..... ..... ..... ..... <u>10만원</u> .. ..... .. <u>10만원</u> ..... <u>10만원</u> .. .....